





## 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 문 귀\*\*

### 〈요 약〉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총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과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치안보조인력, 의무경찰, 정규경찰관, 전환복무,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S1A5A8021973)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서 론</li> <li>II. 현행 치안보조인력 제도 현황 및 문제점</li> <li>III. 외국 사례 및 시사점</li> <li>IV.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li> <li>V. 결 론</li> </ul> |
|--|

## I. 서 론

국방부에서는 출산을 저하, 현역병 지원감소 등을 이유로 2023년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한다) 제도를 2023년에 폐지할 예정으로 있다. 의경 폐지에 따른 대규모의 인력공백으로 인해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기존의 의경이 담당했던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경 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의경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과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현행 치안보조인력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 경찰인력 현황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

현재 경찰인력은 정규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142,208명이며, 경찰관 118,651명(83.4%), 일반직 등 4,062명(2.9%), 의경 19,495명(13.7%)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 2019: 358).

〈표 1〉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현황(2007년~2015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경찰인력	128,887	132,148	135,133	139,139	142,899	134,514	146,504	142,208
경찰관	101,239	102,386	105,357	109,364	113,077	114,658	116,584	118,651

※ 출처 : 경찰청, 2019: 358면 〈표 7-5〉 재구성.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경찰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민생치안 현장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총 17,797명을 충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기능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일반직공무원 총 717명('17년 614명, '18년 103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 경찰인력이 충원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총 범죄 및 5대 범죄 검거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등 경찰인력 증원의 효과를 치안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 2019: 358).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인력 1인당 담당인구(2017년 말 기준)는 429명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찰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다(경찰청, 2018: 398).

〈표 2〉 주요 선진국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258	279	299	284	429

※ 출처 : 경찰청, 2018: 398.

더욱이,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인력충원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경찰청, 2019: 360).<sup>1)</sup>

또한, 최근 범죄수법의 고도화·흉폭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 증가, 예측불가능한 재해·재난발생 증대, 기타 사회불안요소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 환경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유지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적정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비단 경찰 조직의 핵심 과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6년 행정자치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인, 전문가(교수·연구원 등), 공무원 등 1,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약 30%가 한국의 공무원 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해 많다고 답변하였지만 경찰과 소방 분야 공무원은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부족하다며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일반인 60.1%, 전문가 60.5%, 공무원 54%로 집계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절반(49.7%)은 경찰공무원 수의 증가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sup>2)</sup>

1) 특히 지구대, 파출소 등과 같은 지역경찰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국제뉴스, 2016. 9. 20).  
 “‘現정부, 경찰 2만명 증원 추진 3년차, 지역경찰은 여전히 모자라’,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416>.

2) 국민일보, 2016. 12. 30. “공무원 수 많아..경찰·소방은 더 늘려야” 압도적, 2016. 8. 28,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5&aid=0000931090>.

## 2. 의무경찰제도 현황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의경은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않은 병역자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에 전환복무를 요청함으로써 치안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sup>3)</sup>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경 정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9,495명으로, 경찰 정원 142,208명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의경은 정규경찰관을 보조하여 집회시위 관리, 시설경비, 경호, 민생치안, 작전, 교통, 재난관리, 행정보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경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제 폐지 결정에 따라 2023년에 전면 폐지되게 된다.

이 결정에 따라 경찰청은 2017년부터 26,000명에 달했던 의경을 5년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2023년 9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신규 의경 선발도 2021년 2,094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 계획이 없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규모의 인력 공백을 막고자 2022년까지 신규 경찰관 7,700여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다.<sup>4)</sup> 이러한 신규 경찰관 채용 계획은 2017년 기준으로 의경 폐지로 인한 결원 중 1/3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이와 같은 신규 경찰관의 증원만으로는 치안공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특히 많은 경찰인력이 소요되는 집회시위 관리, 중요시설 경비 활동에서 의경의 존재와 역할이 절대적이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지속적인 경찰인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의경 폐지는 기존 경찰관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경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의무경찰 폐지를 앞두고 인원 감축이 이러지면서 현재 복무 중인 의경들의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〇〇지방경찰청 소속 한 중대의 대원 중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상포진에 걸렸으며,

3) 의경 이전에 치안보조인력으로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도입된 전경(직전전투경찰순경)이 있었다. 의경 제도는 1982년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경찰청과 국방부 간의 전환복무 인원배정 협의를 통해 전경 제도가 2013년 9월 25일 폐지됨으로써, 현재 치안보조인력은 의경으로 일원화되었다(강영규 외, 2015: 481~484).

4) 이주락, 2019. 4. 26, “의경 없어진다는데...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그 원인이 높은 근무 강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sup>5)</sup> 정부와 경찰에서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대목이다.

### 3. 치안보조인력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의경은 경찰 총 인력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치안확보를 위한 소중한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의경 폐지 문제는 치안유지 및 조직운영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의경 폐지 및 감축된 의경 인원의 1/3만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정부와 경찰에서는 전체 경찰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경 대체인력방안 및 절대적인 치안인력 확보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함으로써 치안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경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적절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권경득(2006)과 심희섭 등(2017)은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력대체 방안 중 정규경찰관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경의 정규경찰관으로의 가장 적절한 대체비율을 심희섭 등은 1:1로, 권경득은 업무별로 1:1.115~1:3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내지 ‘적정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감축되는 의경 인원의 1/3만을 정규경찰관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연구들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주락 등(2019)은 의경 폐지로 인해 기존에 의경이 담당하는 정부청사, 국회 등과 같은 중요시설의 시설별 의경 대체인력의 종류, 기계경비시스템 등과 같은 장비,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방식의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경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규 경찰관의 증원 외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과 같은 민간경비인력 및 방호원과 같은 다른 국가경비인력을 시설경비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문귀와 이주락(2019)은 의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경찰관서 시설경비의 대체인력으로서 청원경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청원경찰법 등

5) 서울경제, 2019. 7. 22. 의경, 폐지 앞두고 잇따른 인원감축에 ‘몸살’ ... 대상포진 집단발병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SJG0V2V>.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 활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권경득과 심희섭 등은 의경 대체인력방안으로서 신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이주락 등의 연구는 의경 대체인력방안으로 의경이 담당하던 시설경비를 정규 경찰관이 아닌 민간경비 혹은 여타 보안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다. 즉,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폐지되는 의경 인력을 반드시 정규경찰관이나 청원경찰 등과 같은 기존의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으로 대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이러한 私경비로의 대체 보다는 公경비에서의 인력구조재편이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은 경찰(의경 포함)이 하는 업무 중의 일부 업무 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직무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정규 경찰관이나 민간경비인력 등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면서도 이들에 못지 않은 자질, 능력, 업무충실도, 충성도를 갖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의경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 경찰관도 기존의 민간경비 또는 보안인력이 아닌 경찰이 민간인 가운데에서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즉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외국의 경우는 실제 비용이 덜 드는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안보조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 최소화 및 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Ⅲ. 외국 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콜롬비아, 프랑스,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 1. 콜롬비아<sup>6)</sup>

콜롬비아에서는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일부에게 보조경찰로서의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무경찰과 유사한 제도이나 급여 등 혜택 면에서 우리나라 의무경찰제도에 비해 적극적인 형태의 치안보조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경찰제도는 콜롬비아 자국민의 병역의무와 그 선발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1993-48호(Ley 48 de 1993)’<sup>7)</sup>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콜롬비아 보조경찰은 ‘고졸 보조경찰(Auxiliar de Policía bachiller)’과 ‘일반 보조경찰(Auxiliar de Policía regular)’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그 지원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력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무기간으로 고졸 보조경찰의 경우에는 12개월이며, 일반 보조경찰은 18개월이다.

보조경찰은 일반 치안업무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졸 보조경찰은 도시안전부 소속으로 도시에 배치되어 범죄예방 순찰 등 치안보조업무(총기 미소지)를 담당하는 반면, 일반 보조경찰은 전원안전부에 소속되어 지방에서 게릴라 소탕 업무(총기 소지)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차이점을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의무경찰이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콜롬비아에서는 정규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ESMAD-Escuadrón Móvil Antidisturbios)<sup>8)</sup>’가

6) 이하의 콜롬비아의 치안보조인력제도에 관한 내용은 심희섭 등의 연구보고서(2017)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7) LEY 48 DE 1993 "Por la cual se reglamenta el servicio de Reclutamiento y Movilización".

8) 콜롬비아 기동대는 경찰청 도시안전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23개 부대, 3,600명의 경찰관이 20개의 도시에 배치되어 있다.

집회시위 관리 등 경비업무를 전담한다. 보조경찰의 수는 2013년 17,858명에서 2014년 25,89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9)</sup>

## 2. 프랑스<sup>10)</sup>

프랑스에서는 내무부 소속 보조경찰(*policier auxiliaire*)<sup>11)</sup>과 국방부 소속 보조군인경찰(*gendarme auxiliaire*)<sup>12)</sup>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기로 한 바 있다.

1996년 5월 국방의무가 폐지되자 이와 같은 치안보조인력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1997년 청년일자리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경찰은 안전보조원(*adjoint de sécurité*)으로 대체되었으며<sup>13)</sup>, 보조군인경찰은 1998년 자원 보조군인경찰(*gendarme adjoint volontaire*)로 대체되었다(Haberbusch, 2001: 64-66).

안전보조원은 국가경찰 소속 치안보조인력으로서, 3년간 계약제로 선발되며, 계약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함으로써 총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국방의무 폐지 후 1997년 청년일자리 창출 법률<sup>14)</sup>에 의해 신설된 안전보조원 제도는 보조경찰관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형사소송법전 제21-1ter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 11,000명이 활동 중이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sup>15)</sup>

이들의 채용절차는 먼저, 지원자는 지원서 등을 경찰관서에 제출하며, 서류심사, 심리기술 테스트, 불어 구술 및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테스트 통과 후에는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심리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

9) [www.elnuevosiglo.com.co/articulos/4-2014-pie-de-fuerza-aumento-en-42-mil-efectivos](http://www.elnuevosiglo.com.co/articulos/4-2014-pie-de-fuerza-aumento-en-42-mil-efectivos).

10) 이하 프랑스의 치안보조인력 제도에 관한 내용은 심하섭 등의 연구보고서(2017)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11) 보조경찰 제도는 1987년 7월 10일자 경찰에서의 국방의무에 관한 관련 제87-512호 법률(*Loi n° 87-512 du 10 juillet 1987 relative au service national dans la police*)에 의해 도입되었다(<http://legifrance.gouv.fr>).

12) 보조군인경찰 제도는 1970년 국방의무에 관한 제70-596호 법률(*Loi n° 70-596 du 9 juillet 1970 relative au service national*)에 의해 도입되었다([www.legifrance.gouv.fr](http://www.legifrance.gouv.fr)).

13) *Activités quotidiennes des policiers auxiliaires de la Police nationale à Paris et à Sen*([www.ecpad.fr](http://www.ecpad.fr)).

14) *La loi du 16 octobre 1997 relative au développement d'activités pour l'emploi des jeunes*.

15) 이하의 내용은 프랑스 국립경찰 홈페이지 자료

<http://www.lapolice.nationale.recrute.fr/maintenance/maintenance.html>을 참조한 것이다.

게 된다. 최종합격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식 근무 전 14주 간의 유급 교육훈련을 받는데, 12주간은 경찰학교에서 경찰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며, 2주간은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훈련 후 법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불합격자는 계약이 취소된다.

교육훈련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보조원은 1달에 약 1158유로(한화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근무기간 중 혜택으로는 근무 중 직업교육을 받고, 경찰순경공채시험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는 데, 계약기간 만료 후 약 75%의 안전보조원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한다.

안전보조원의 임무는 주로 순경(*gardiens de la paix*: 평화수호자)을 보조하면서 치안과 관련된 예방, 지원과 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사법경찰보조리로서 사법권 역시 행사할 수 있다.

1998년 국방의무폐지 후 보조군경찰관을 대체하면서 신설된 자원 보조군인경찰은 군인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보조하는 자원 계약직 군인으로서 최대 5년(첫번째 계약에서 2년, 계약연장 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14,000명<sup>16)</sup>의 자원 보조군인경찰이 있다(LUC, 2005).

자원 보조군인경찰은 사법경찰보조리직, 특정직, 후보생직, 스포츠직 네 분류로 나뉘는데, 이 중 치안업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사법경찰보조리직이다. 사법경찰보조리직은 군인경찰 부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무, 즉 범죄예방, 감시와 현장출동, 지원 및 구조, 조사 등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경찰 소속의 안전보조원과 같이 일정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17)</sup>

자원 보조군인경찰은 정식 근무 전 군인경찰학교에서 최초 13주 간의 훈련을 받은 뒤 추가로 12주간의 교육을 경력있는 군인경찰 부사관의 감독 하에 받게 된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 대부분의 자원 보조군인경찰은 국토방위대, 군경찰 감시 및 현장출동부대 혹은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속되며, 일부는 항공군경찰, 해양군경찰, 공화국 수비대, 기동군경찰대에 배속된다.<sup>18)</sup>

16) Revue annuelle de la condition militaire, octobre 2015.

17) 프랑스 군인경찰 홈페이지, [www.gendarmerie.interieur.gouv.fr](http://www.gendarmerie.interieur.gouv.fr).

18) 프랑스 군인경찰 홈페이지, [www.gendarmerie.interieur.gouv.fr](http://www.gendarmerie.interieur.gouv.fr).

### 3. 중국<sup>19)</sup>

중국의 경찰보조인력은 각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공안기관에서 필기, 면접,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채용하고 노동관계를 수립,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의 지휘와 감독 하에 경찰업무보조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각급 공안기관은 업무의 수요에 따라 동급의 인민정부의 허가를 얻어 일정 수의 경찰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sup>20)</sup>

경찰보조인력은 공안기관의 직접적인 지휘와 관리·감독 하에 경찰법집행을 도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공안기관의 중요한 역량중 하나이다. 기능과 장비는 현재 민간경비(수위)와 인민경찰의 중간정도로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법집행권한을 갖는다. 단,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안보, 수사, 사이버수사, 대테러 등 법집행에 있어서 경찰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sup>21)</sup> 기본적인 경찰봉과 같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의복은 공안기관인민경찰복장관리 규정을 참조하여 착용한다. 해당지역의 시민을 채용하는 계약직의 형태로 새로운 직업중 하나이다.

경찰보조인력의 직책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문직(文職)과 보경(補警)으로 나뉘며,<sup>22)</sup> 문직은 공안기관의 비법집행인민경찰활동에 협조하여 행정관리, 기술지원, 경무보장 등 업무를 담당하며, 보경은 공안기관 법집행인민경찰에 협조하여 법집행이나 기타 근무활동을 한다.

### 4. 시사점

치안연건, 집회시위관리 업무 담당 주체, 보조경찰관의 선발요건·유형 등 우리와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의 의경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경찰이다. 하지만 2023년에 의경 제도가 폐지되는 우리로서는 콜롬비아의 치안보조인력 제도가 갖는 함의는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및 중국의 보조경찰제도가 우리에게 갖는 함의가 더 크다. 비록 지원대상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아닌 민간인 중에서 선발되며, 자격요건 및 충

19) 이하 중국의 치안보조인력제도에 관한 내용은 심화섭 등의 연구보고서(2017)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20) 〈關於規範公安機關警務補助人員管理工作的意見〉 第7條

21) 〈關於規範公安機關警務補助人員管理工作的意見〉 第6條

22) 〈關於規範公安機關警務補助人員管理工作的意見〉 第3條

원절차 등이 우리와 다르기는 하지만, 정규경찰관 이외에 적은 비용으로 상당수의 치안보조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경제도가 폐지 예정에 있는 반면, 폐지된 인원만큼 정규경찰관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경찰인력의 경우에는 프랑스 및 중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인 중에서 계약직 형태로 보조경찰제도를 별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은 엄격한 선발절차 및 비교적 장기간(14주~25주)의 채용 전 교육훈련을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자 했으며, 채용 후 경찰순경공채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무료 제공 등을 통해 계약만료 후 보조경찰관들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보조경찰인력 충원에 드는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지불하고 선발·채용 및 채용 후 관리감독은 각 공안기관에서 업무의 수요에 맞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임무 및 기능에 따라 문직과 보경으로 나누고, 우리의 의경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에 정규 경찰관을 보조함으로써 치안유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실시된다면 보조경찰인력 제도를 중국의 경우와 같이 각 지방경찰청의 치안수요에 맞게 그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정규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안도 운영해 볼만 하다고 하겠다.

## IV.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1. 명칭

현행 의무경찰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으로는 ‘치안보조원’ 같은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선발·채용

‘치안보조원’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별도의 채용제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 순경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준해서 하되, 필기시험의 경우에만 차등을 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응시연령(18세 이상 30세 이하), 학력(제한 없음), 병역(병역필<sup>23)</sup> 또는 면제), 기타 신체조건, 운전면허 등에 있어서는 현재 일반 순경 공채에 준하게 한다. 또한 신체검사, 체력시험, 적성검사, 면접 역시 기존 일반 순경 공채 채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다만 체력시험이나 면접의 경우 일반 순경 공개 채용 절차 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2과목 정도로 하고,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나머지 1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하되, 영어나 한국사 외에 경찰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예를 들면 범죄학, 형사법, 헌법, 행정법, 행정학 등에서 선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시험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 중에서 일부를 경찰행정학과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현재 100개가 넘는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존재하고 있고, 이 학과·학부 출신 대부분이 일반 순경 또는 경찰행정학과 시험 등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이들 학과·학부 출신들이 경찰에 입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형평성 혹은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경찰행정학과 특채 선발 인원 마저도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경찰관련 학과·학부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을 프랑스 및 중국의 경우와 같이 계약직(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24)</sup> 이

23) 현재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상태이므로, 이 점을 감안한다면 병역과 관련된 조건은 변경될 수도 있다.

24) 익명의 심사자는 실제, 정규직 경찰관을 목표로 하는 경찰학 관련 전공자들이 계약직 치안보조원 채용에 관심이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 부분은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사자의 의견대로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경찰학 전공자들이 경찰관을 희망하면서도 정규경찰관이 되는 숫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계약직으로라도 경찰에 입문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안이 경찰학 전공자들에게 대안의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러한 제도 도입은 보다 양질의 치안보조인력 확보, 청년실업의 부분적 해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교육훈련

현행 의경제도 하에서의 3주간의 신입의경과정 교육이 아닌 신입순경 교육과 같은 6개월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내용도 신입순경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다양한 이론 및 실무 프로그램 운용함으로써 정규경찰관에 상응하는 정도의 업무능력 및 충성도를 갖추도록 하여 향후 치안현장 투입시 원활한 치안보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장소는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 기간 중 부적응자, 부적격자, 평가 미통과자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4. 근무부서 및 활동분야

기존의 의경이 담당했던 주 업무분야, 특히 집회시위관리 등 경비분야 및 방법활동 등 생활안전분야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여타 근무부서 및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중요도에 따라 결정하여 인원을 분산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 5. 보수 및 혜택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3년으로 하고 최대 6년까지(1회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수는 프랑스와 같은 외국의 사례,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다른 계약직의 보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 중 직업교육 혜택, 정규경찰관 시험응시를 위한 교육비 제공, 향후 국가기관 취업 시, 보조경찰 복무기간을 퇴직금 및 연금에 합산 등의 혜택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6. 법적 근거 및 지위

민간계약직 보조경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보조경찰



제도 운영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을 참조하여 보조경찰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근거 법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조경찰인력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정규경찰관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에 대해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타 보조경찰의 운영에 관한 경찰 내부 지침을 경찰청 훈령 형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의경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3년에 의경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의경 인력의 감축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규경찰관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축소되는 의경 전체 인원의 1/3만이 정규경찰관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찰로서는 뭔가 설득력 있고 타당한 다른 대안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정부와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 중의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장점 혹은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첫째,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 채용 시 정규경찰관이나 민간경비 혹은 기타 보안인력 충원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치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 채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적격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엄정한 충원절차 및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정규 신입경찰관에 상응하는 만큼의 업무 능력, 성실도, 충성도를 갖춘 인력이 치안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현행 의경보다는 훨씬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치안보조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력 경쟁채용 등을 통해 향후 경찰 조직에 입직한다면 경찰조직 인사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채용절차를 통해 충원된 정규경찰관보다 훨씬 전문적인 인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민간계약직 치안보조경찰 도입은 향후 경찰인력 충원의 또 다른 전략으로 활용가능하다. 즉 현행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같이 치안보조경찰 유경험자에 대한 경력공개채용을 통해 정규경찰관을 선발하는 방안을 경찰채용제도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제도 도입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sup>25)</sup>

첫째,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반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둘째, 정년보장이 없는 계약직에 청년들이 만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2022년까지 신규 채용되는 경찰관 7,700여명 외에 감축되는 의경 인원이 18,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인원 모두를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에는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넷째, 업무속련도, 업무성실도, 충성도 측면에서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이 의경이나 다른 민간경비 혹은 보안인력보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경 폐지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는 대체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첨단 기술·장비·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혹은 치안업무보조인력의 개편 혹은 재편을 통한 효과적인 경찰인력 운용방안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경찰에서는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25) 이하에서 기술한 문제 혹은 비판들은 모두 익명의 심사자의 의견이며, 의견을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외문헌

- 강영규, 박석, 최성재, 류재혁, 강욱, 윤성철, 김용민 (2015).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 강욱 외 (2018). *국회 외곽 경호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경비대 인원 감축 관련*. 국회사무처.
- 경찰청 (2018). *경찰백서 2018*.
- 경찰청 (2019). *경찰백서 2019*.
- 권경득 (2006).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 인력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김문귀, 이주락 (2019). *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14(4), 117-138.
- 심희섭 (2017). *의무경찰 감축 시 적정 대체 경찰관 확보 방안*. 경찰청.
- 이주락 외 (2019). *의경폐지에 따른 대체인력분석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Benoît Haberbusch(aspirant) (2001). *Gendarmes auxiliaires. Les premiers appelés de la gendarmerie(1970-1972)*. *Armées d'aujourd'hui*, 264, 64-66.
- Jean-Noël LUC(dir.) (2005). *Histoire de la maréchaussée et de la gendarmerie, Guide de recherche*. Maison Alfort, Service Historiqu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 2. 기타

- 국민일보 (2016, 8, 28). *공무원 수 많아...경찰·소방은 더 늘려야*.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5&aid=0000931090>.
- 국제뉴스 (2016, 9, 20). *現정부, 경찰 2만명 증원 추진 3년차, 지역경찰은 여전히 모자라*.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416>.
- 보안뉴스 (2019, 4, 26). *의경 없어진다는데...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 서울경제 (2019, 7, 22). *의경, 폐지 앞두고 잇따른 인원감축에 몸살...대상포진 집단발병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SJG0V2V>.
- 콜롬비아 지역신문(신세기) 홈페이지 (2019). [On-line] <http://www.lapolicenacionalerecrute.fr/maintenance/maintenance.htm>.
- 프랑스 국립경찰 홈페이지 (2019). [On-line] <http://www.elnuevosiglo.com.co/articulos/4-2014-pie-de-aumento-en-42-mil-efectivos>.

프랑스 군인경찰 홈페이지 (2019). [On-line] <http://www.gendarmerie.interieur.gouv.fr>.

프랑스 법률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 (2019) [On-line] [www.legifrance.gouv.fr](http://www.legifrance.gouv.fr)

Activités quotidiennes des policiers auxiliaires de la Police nationale à Paris et à Sen (2019).

<http://www.ecpad.fr>.

*Revue annuelle de la condition militaire*, octobre 2015.

【Abstract】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System of Assistant Police Officer

Kim, Moon-Kwi

The mandatory police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ecuring security and securing social safety as a security assistant, is expected to face difficulties in supplying the mandatory police manpower and securing absolute police manpower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efense's abolition of the conversion service syste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concrete plan to replace the mandatory police officers as security assistants, recruiting contractors from civilians who are not military service resources or regular police officers, and using them for security assistance.

More ultimately, this study goes beyond securing obligatory police to reduce or abolish mandatory police, which has been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It aims to present the rescue and operation directions so that the police can provide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1)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police personnel, deriv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securing the police personnel or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due to changes in security demand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2)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organization, 3)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cases operating similar systems to derive specific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contractors for private contract workers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specific operation pla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plan of private contract worker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1)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manpower and deriv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securing an absolute police manpower or increasing the manpower of the police in response to changes in security demand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ecurity aid system. 2)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orientation of reorganization of existing system of assistant police officer, 3)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cases utilizing security aids similar

to Korea, and 4) The specific operation pla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plan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ty aids for private contract workers in Korea, from recruitment procedures to activities.

**Keywords:** Assistant police officer, Auxiliary police, Regular police office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Civil contractual assistant police officer